

대전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나1117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관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5. 25.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5098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44,313,69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313,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남편 D(2012. 5. 15. 혼인, 2018. 12. 7. 이혼)의 친구인 C에게 2015. 3. 24. 10,000,000원, 2016. 5. 26. 19,5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은 2016. 6. 30. 자신의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14.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7.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카단206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36,246,574원(원금 30,000,000원, 이자 6,246,574원)의 보전을 위하여 C 소유의 토지 5필지 및 단독주택 1건에 대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3.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가소4789 대여금 사건에서 2017. 12. 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5.부터 2017. 11. 9.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C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한 2017. 7. 2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된 2019. 2. 15. 제기 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E 총청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한 2017. 7. 27.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2. 1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D의 친구인 C으로부터 단란주점 운영을 위한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게 되었다. 원고와 D는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부부였고, D와 C은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원고도 C의 가족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②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즈음인 2016. 6.경 단란주점 운영으로 인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였고, 차임도 연체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D도 이를

건물주로부터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처분청 예산세무서)의 2015. 4. 9.자 압류등기가 2016. 3. 2. 말소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 9. 21.자 압류 등기가 2016. 5. 20. 말소되었고, 유한회사 W의 청구금액 7,869,200원의 2015. 11. 30.자 가압류 등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5카단322)가 2016. 7. 1. 말소되었고, 대한민국(처분청 예산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6. 3. 22.자 압류 등기가 2016. 7. 14. 말소되었으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의 채권최고액 184,320,000원의 2012. 3.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자 G의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의 2013. 10.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2016. 7. 14. 말소되었다.

③ D는 X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주었다. 당시 D는 C으로부터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하여 주려고 하였는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처제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후는 물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 이전에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 받아 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⑥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대상은 당시 C의 소유였던 다음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부동산과 같고,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압류할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2016. 6. 30. 기준 가액(원)	2019. 8. 20. 기준 가액(원)
1	당진시 K 전 400㎡	12,800,000	13,600,000
2	당진시 L 전 460㎡	14,260,000	15,180,000
3	당진시 H 대 189㎡	14,931,000	15,876,000
4	당진시 I 대 33㎡	2,607,000	2,772,000
5	당진시 J 대 112㎡	8,848,000	9,408,000
6	제4, 5, 6번 토지상 단독주택 91.76㎡	69,003,520	62,396,800
7	이 사건 부동산	287,000,000	250,000,000

⑦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에는, ‘C은 이 사건 가압류 대상 부동산 이외에는 달리 알려진 재산도 없고, 채무자의 제반 경제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마저 타에 처분 및 은닉할 우려가 다분히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훗날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이 우려되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가압류신청진술서에는, ‘채무자 C의 책임재산이 이 사건 가압류할 재산 외에 달리 알려진 것이 없어서 이것이 채권보전의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⑤ 기재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10,000,000원,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11,500,000원, 순번 3 내지 6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49,9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⑧ 한편,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이 사건 가압류에 앞서 이 사건 가압류 부동산 중 위 적극재산 목록 순번 6 기재 단독주택에는 대한민국(처분청 예산세무서)의 2016. 7. 18.자 압류, 당진시의 2016. 8. 9.자 압류 및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2012. 1. 2.자 채권자 Q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⑨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으로부터 소명자료로 차용증을 제출하라는 2017. 7. 28.자 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2017. 7. 31. 원고가 직접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금 증서를 작성 받았다.

⑩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 및 위 2017. 7. 31.자 차용금 증서에는 모두 C의 주소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다.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소재 부동산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파악하기 쉬운 부동산인 점(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 신청인 경우에도 채무자 주소지 소재 가압류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원칙적으로 첨부하도록 가압류 신청 실무가 운영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 전부터 C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C이 소유하였던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가장 큰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 사건에 직접 관련 사실 및 가압류신청서, 가압류신청진술서의 각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가압류 대상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어 더 이상 C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⑪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가압류신청진술서상 C의 재산 가액 기재, 이 사건 부동산 및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각 부동산등기부, 배우자인 D, C과의 인적 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C의 채무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C의 국세, 금융기관 등의 채무액이 C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를 초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순영, 판사 윤이진, 판사 안영화